

천연가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2013.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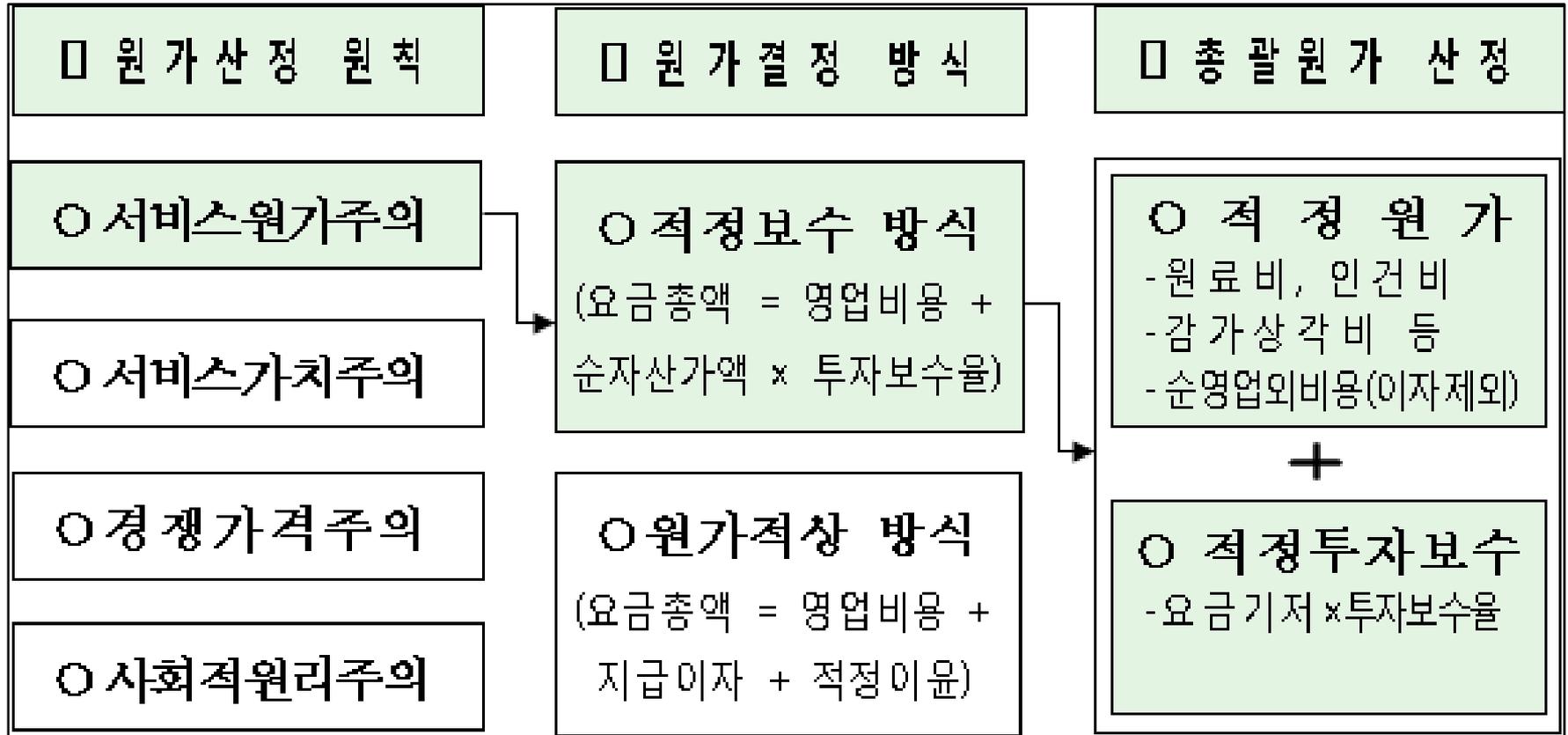
목 차

- 천연가스 요금 결정방식
- 천연가스 요금체계 현황
- 천연가스 요금체계 개선 방향
-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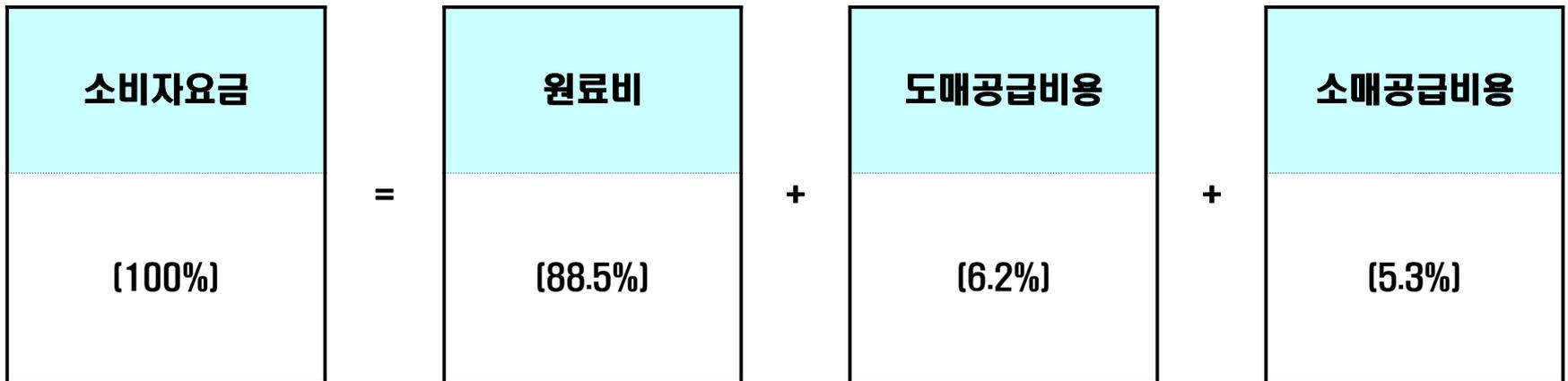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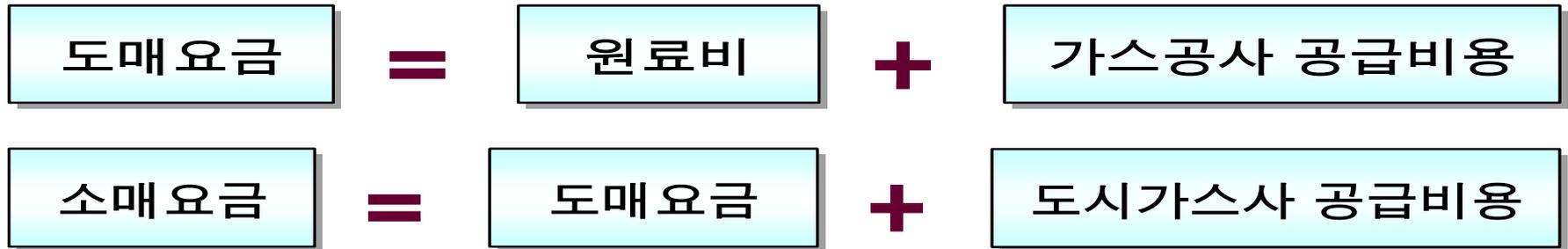
1. 천연가스 요금 결정 방식(1/2)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같이 **서비스원가주의**를 기초로 **적정보수방식**에 따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



1. 천연가스 요금 결정 방식(2/2)

- 천연가스 요금은 도매 요금과 소매 요금으로 구분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됨



2. 천연가스 요금체계 현황 : 원료비 산정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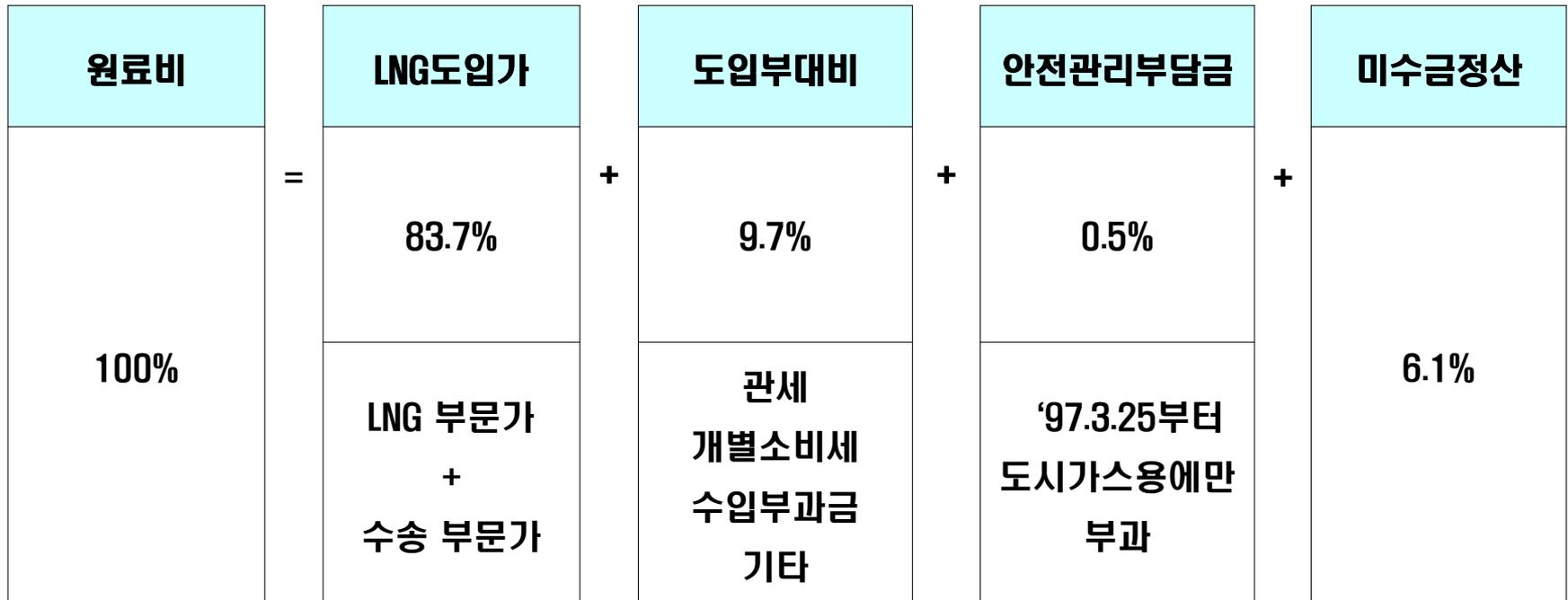
원료비단가
[원/MJ]

=

【일반원료비 정산단가 가감 후 일반원료비,스팟원료비, 동해가스
및 LPG의 물량가중평균단가】 ÷ 【1-손실율】

+

안전관리
부담금



2. 천연가스 요금체제 현황 :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

구분	주요내용
○ 조정범위	기준원료비를 $\pm 3\%$ 초과한 경우 원료비를 조정
○ 조정주기	2개월(홀수월) 단위로 조정 여부 결정('01년까지는 분기단위)
○ 산정대상	
- 물량	- 연간 도입물량 기준 산정(일반원료비)
- 환율	- 조정월(n월) 기준으로 n-1월의 <u>최초 5영업일 평균환율</u>
- 유가	- 조정월(n월) 기준으로 n-1월의 <u>ICP 유가 및 추정 JCC유가 등</u>
○ 적용기간	n월과 n+1월
○ 단가산정방식	각 도입계약별 가격공식을 연간도입물량비율로 가중평균
○ 손익정산	전년 4분기부터 당년 3분기까지의 모든 원료비 손익을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산 후 익년도 요금에 반영
○ 기타	비상시 연동제 유보 규정



2. 천연가스 요금체계 현황 : 용도별 원료비 연동제 비교

구분	관련 규정	적용 주기	적용 조건	특징
발전용	발전용 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매월	매월 재산정	1년 단위 정산 실시 (비상시 유보 가능)
도시가스용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매2개월 (홀수월)	기준원료비의 3% 이상 변동시 원료비 조정	1년 단위 정산 실시 (비상시 유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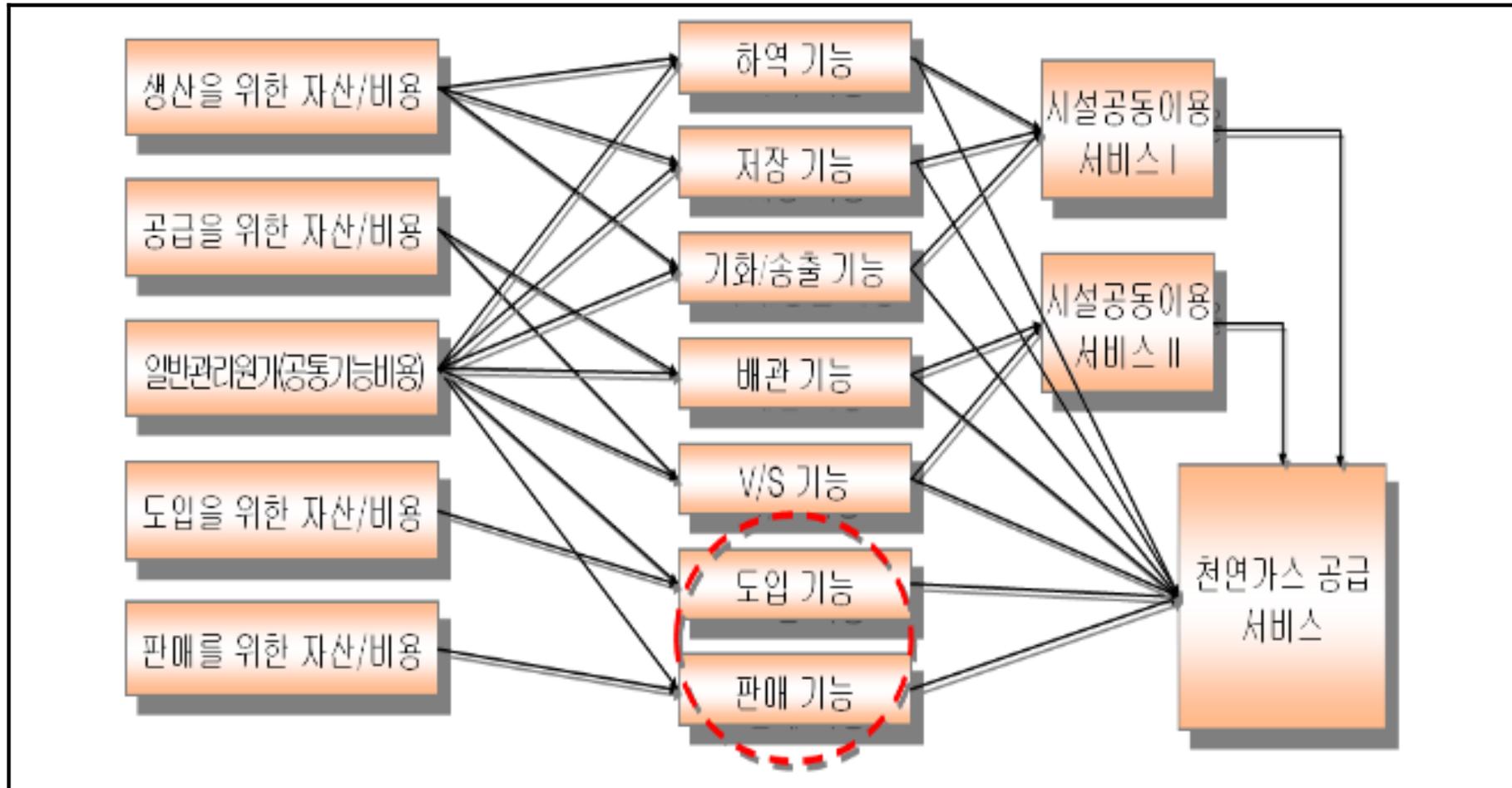
2. 천연가스 요금체계 현황 : 도매공급비용 산정 체계

〈공정보수 방식에 의한 공급비용 산정체계〉



2. 천연가스 요금체계 현황 : 공급비용 배분체계

〈자산과 비용의 흐름〉



3. 천연가스 요금체계 개선 방향 : 요금제도 요건

근거	내용
EU Gas Dir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용 - 유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인 기준 적용 - 거래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하고 투명하게 기준 적용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준 적용
도시가스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하며,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참여자간의 책임과 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액이 적정·명확해야 함 -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함



공평성을 유지하는 실질 원가부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안정적 공급 위한 투자재원 및 적정이윤 확보



원료비/공급비용 산정 체계

원료비 연동제

규제·비규제 사업 구분 기준

3-1.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효성 증대 방안



문제 발생의 원인

- 비상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 연동제 유보시 경제적 효과 분석 부족
- 유보금 회수 기간 및 한도 등을 제한하는 규정 결여
- 가스공사의 유보금의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 부재

개선 방안

- 유보 조건의 구체화
- 경제적 효과 분석 의무화
- 회수 기간 및 한도 등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3-2. 규제 · 비규제 사업 구분 기준 개선 방안(1/2)

구분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 등으로 해외 자원 확보 경쟁 심화 -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자원 사업 참여 확대 -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 필요성 증대
가스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부터 오만, 카타르 프로젝트의 지분 참여를 통한 배당 이익 발생 - 공공성 확보 논의를 통하여 2005년부터 배당 이익을 요금에 반영
규제 · 비규제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가스의 국내 유입 여부

3-2. 규제 · 비규제 사업 구분 기준 개선 방안(2/2)

정부의 규제 · 비규제사업 구분 기준 및 절차 규정 방안

규제서비스
분류 기준

-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에 의거하여 제공(공공성)되는 서비스이면서
- 시장의 진입 장벽, 외부 효과, 시장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성) 서비스

분류 절차

- 공공기관이 규제 · 비규제사업을 분류하여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소관 부처는 승인 여부를 결정

고려 사항

- ◆ 에너지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위하여, 해외 투자수익의 해외 자원 사업에 대한 재투자 경우에 대한 탄력적 구분 필요
- ◆ 요금 인하가 에너지 분야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아니며,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 제고 필요

4. 요약 및 결론

요금제도의 지향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 원가부담의 원칙●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공급 안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의 미흡한 제도적 장치● 규제 · 비규제사업 구분의 불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 조건의 구체화,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의무화, 회수 기간 및 한도 규정 신설 등●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 구분 기준 구축



감사합니다

KOREA GAS CORPORATION